



뉴욕 재개



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소매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을 비롯해 필수 소매 사업의 운영이 이전에 필수로 허용되어 사업 또는 서비스의 일부로서 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을 운영하는 주 전역의 기타 지역 등 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을 제공하는 모든 소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소매 사업체는 소매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

필수

물리적 거리두기

- ✓ 직원 간 6피트 거리 유지. 단, 안전 또는 업무 핵심 활동 수행을 위해 더욱 짧은 거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✓ 모든 실내 작업에 대하여, 현장 인력을 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 활동 실시 시에 필수적인 직원으로 제한하고, 타인과 6 피트 거리를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장 픽업을 해야 할 고객을 포함한 현장 인원은 점유 등록서에 명시된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.
- ✓ 직원이 물리적 장벽(플렉시유리 등) 없이 다른 직원 또는 고객과 6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경우 직원은 언제나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✓ 좁은 공간(엘리베이터, 좁은 창고, 금전 등록기 뒤, 좁은 매장 진열대 등)에는 반드시 한 번에 한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. 단, 모든 직원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✓ 한 사람 이상이 공간에 있는 경우,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.
- ✓ 중요하지 않은 대면 모임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한합니다.
- ✓ 픽업 및 배달 전용 구역을 지정하여 최대한 접촉을 제한합니다.
- ✓ 고용주는 직원에게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를 무료로 제공하고, 교체를 위해 충분한 양의 페이스 커버를 확보해야 합니다.
- ✓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는 천 소재(직접 봉제로 만든 것, 퀵핏, 반다나 등) 및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 단, 업무 성격으로 인해 더욱 엄격한 PPE(N95 인공호흡기, 페이스 실드 등)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권장 모범 사례

- ✓ 직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만들어 현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만 대기하도록 하고, 소매 영업 시간을 제한하여 긴 시간동안 직원 및 고객의 이동을 분산하며, 도착/출발 시간을 교대로 설정하고 A/B 팀을 분리합니다.
- ✓ 근무 공간 및 직원 좌석 수를 변경/제한하여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.
- ✓ 가능하지 않은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공기 흐름, 냉온방 또는 환기가 원활한 구역에서 안면 마스크를 제공하고 착용을 요구하며 물리적 장벽(플라스틱 차단벽 등)을 설치해야 합니다.
- ✓ 좁은 통로, 복도, 공간에 화살표가 표시된 표지를 사용하여 양방향 움직임을 완화합니다.
- ✓ 픽업 시간을 통지해 고객의 도착 시간을 교대로 지정하고, 창을 활용하여 직접 전달을 피하십시오.
- ✓ 고객 대기 구역(선, 주차장 등) 지정하고 배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, 고객이 차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터치리스 배송 시스템을 실시합니다.
- ✓ 고객이 터치리스 결제 또는 선결제 하도록 권고합니다.
- ✓ 가능하면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진행합니다. 대면 모임(회의 등)은 참가자들 사이에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개방적이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개최해야 합니다.
- ✓ 비필수 방문객의 소매점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✓ 공용 공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공간(출/퇴근 스테이션, 건강 선별 스테이션, 금전 등록기 등)에 테이프를 활용한 거리두기 마커 혹은 6피트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합니다.



뉴욕 재개



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소매 지침

본 지침은 [재개](#)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을 비롯해 필수 소매 사업의 운영이 이전에 필수로 허용되어 사업 또는 서비스의 일부로서 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을 운영하는 주 전역의 기타 지역 등 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을 제공하는 모든 소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소매 사업체는 소매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보호 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안전 가리개는 사용 후 또는 손상되거나 더러워졌을 때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며, 공유할 수 없으며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. ✓ 물건(등록기 등) 공유를 제한하고 공유 물체의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. 또는 공유 물체 또는 접촉이 잦은 구역의 경우, 장갑(무역 관련 또는 의료용)을 착용합니다. 접촉 전후 손을 소독하거나 씻습니다. 	
위생, 청소 및 소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질병 통제 예방 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, CDC) 및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, DOH)의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날짜, 시간 및 청소 범위를 기록한 청소 일지를 현장에 유지하십시오. ✓ 비누, 물, 페이퍼 타월을 이용해 손을 씻을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을 비롯해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 알코올 최소 60 퍼센트를 함유한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제공 및 유지합니다. ✓ 직원들이 자주 접촉하는 공유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청소/소독 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, 그 후 손 위생 조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. ✓ 식품 취급 전 과정에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. ✓ 상품 이송(트럭 적재 등) 전후 손을 소독합니다. ✓ 최소 매 시프트 후, 매일 또는 필요한 경우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, 공유 물품(등록기 등) 및 표면을 비롯해 지불 장치, 픽업 장소, 화장실, 공용 구역 등 이동량이 많은 구역은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합니다. ✓ 환경 보호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, EPA)이 코로나19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환경보존부(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, DEC) 제품을 사용합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반품된 제품의 수령 및 재판매 계획을 세우거나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수정합니다. ✓ 가능한 경우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를 늘리고(창문 및 문 열기 등) 안전 예방 조치를 준수합니다. ✓ 직원이 점심을 집에서 가져오고 식사 중 직원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.

STAY HOME.

STOP THE SPREAD.

SAVE LIVES.



뉴욕 재개

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소매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을 비롯해 필수 소매 사업의 운영이 이전에 필수로 허용되어 사업 또는 서비스의 일부로서 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을 운영하는 주 전역의 기타 지역 등 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을 제공하는 모든 소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소매 사업체는 소매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위생, 청소 및 소독(계속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청소 또는 소독 제품이나 청소 및 소독 행위가 안전 상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소재나 기기를 손상하는 경우, 직원은 사용 중 손 위생 스테이션을 사용 및/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받아야 ✓ 음식 및 음료의 공유를 금지합니다(뷔페 스타일 식사). 	
의사소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. ✓ 적절한 위생,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,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,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도록 소매점 내부 및 외부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. ✓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안전 지침을 자주 전달합니다. ✓ 근로자, 방문객, 또는 고객인 타인과 소매점에서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하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직원은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하고 접촉 추적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근로자 또는 방문자와 같은 잠재적 접촉 통보가 포함되며 주 및 연방법 및 규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. ✓ 현장에 완성된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CDC 및 DOH 지침에 따라 소셜 미디어, 구두 커뮤니케이션 및 표지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주문/픽업 지침을 제공하고 타인과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페이스 커버 사용을 권장하십시오. ✓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으로 직원, 방문자 및 고객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합니다.

STAY HOME.

STOP THE SPREAD.

SAVE LIVES.



뉴욕 재개

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 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소매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을 비롯해 필수 소매 사업의 운영이 이전에 필수로 허용되어 사업 또는 서비스의 일부로서 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을 운영하는 주 전역의 기타 지역 등 커브사이드 및 매장 픽업을 제공하는 모든 소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소매 사업체는 소매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선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아픈 직원은 자택에 머물거나 직장에서 아프기 시작할 경우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✓ 매일 업무 개시 전 필수 방문자를 대상으로(단 고객은 제외) 필수 건강 선별 검사(설문지, 체온 검사 등)를 진행하며, (1)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증상, (2)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/또는 (3)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사례와의 근접 또는 밀접한 접촉에 대해 물어보아야 합니다. 평가 응답은 매일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검토는 문서화해야 합니다. ✓ 확진 사례 발생 시, 청소, 소독 및 접촉자 추적 계획을 세웁니다. ✓ 현장 선별자는 고용주가 임명한 CDC, DOH 및 OSHA 프로토콜 숙지자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현장에 통보하기 전 최대한 원격 선별(전화 또는 전자적 조사 등)을 실시합니다. ✓ 고객에게 건강 선별 조치를 완료하고 연락 정보를 제공하여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. 단,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. ✓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,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. ✓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 및 고객을 제외하고 직장 또는 지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근로자 및 방문자의 연속적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.